

#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2차)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인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 1. 점검대상 및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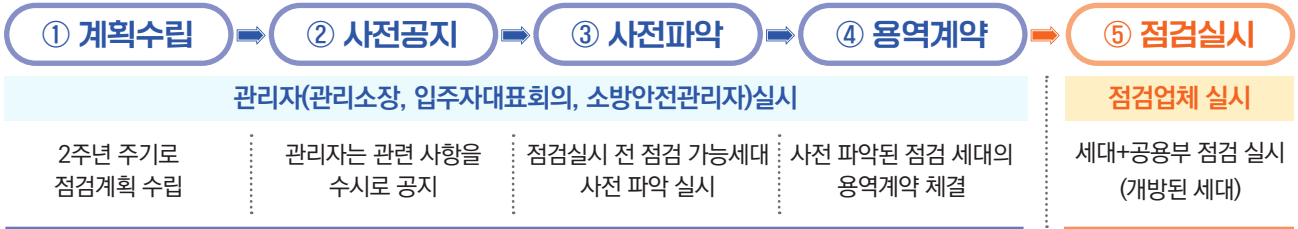
- ☑ **대 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 **시 기**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

예시 2017년 6월 30일 사용승인, 종합점검 대상 A아파트

시기	종류	점검비율(계획)	시기	종류	점검비율(계획)
① '23년 6월	종합점검	30% 이상	② '23년 12월	작동점검	30% 이상
③ '24년 6월	종합점검	30% 이상	④ '24년 12월	작동점검	잔여 세대

## 2. 세대점검 실시절차

- ☑ 소방시설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 ☑ 입주인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 점검** ① 입주인 등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수령(관리사무소) ▶ ② 점검 및 작성 ▶ ③ 관리사무소에 제출
- 보관** 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점검자 작성) 및 ②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 2년간 보관



##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알림

**원칙** 기간 내 세대점검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점검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

**'24.12.1. ~ '25.11.30.**

- ☑ **이행기간** 20일 이내 부여
- ☑ **제출방법** 자체점검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



### 1 이행 완료

이행기간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경우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작성 제출 ▶ **과태료 미부과**

### 2 이행 미완료

이행기간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